

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제정 2019.08.01.

개정 2021.06.22.

개정 2021.07.13.

개정 2022.07.14.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관련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라 한다)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“수수료 등”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운용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보수를 포함한다.

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다. 판매보수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,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
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
다. 기본수수료 : 투자자문·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재산 또는 투자자문대상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

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.

라. 성과수수료 : 투자자문·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투자자문에 관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.

제4조 (수수료 등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집합투자기구의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(성과보수의 제한), 동법시행령 제88조(성과보수의 제한)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(성과보수의 제한)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2.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.
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고, 이 경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
③ 투자자문 수수료 및 투자일임 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 계약서 및 투자일임 계약서에 수수료 계산 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5조 (집합투자업,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있어서 수수료 부과절차)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의 상품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
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 (수수료의 인상)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.

제7조 (투자광고)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 (공시 및 통보) 회사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같음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2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3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2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